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 보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장

제 7 호 2015. 1. 19.(월)

규 칙

○남원시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입법예고.....1

훈 령

○남원시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.....7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공고 제2015-97호

남원시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월 19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지역별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하여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, 농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례 적용대상 (안 제2조)

나. 시설기준 특례 적용 사항 (안 제3조 및 안 별표 1)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원예허브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 할 곳

■ 우편번호 : 590-701

■ 주 소 :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번지)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담당
(전화:063-620-6248, FAX:063-620-6745, E-mail:earcandy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, 컴퓨터 통신 등 가능

마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원예허브과 가공유통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.
(☎063-620-6248)

4. 남원시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(안) : 붙임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(안)

제1조(목적)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·가공을 하여 식품제조·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.

1. 「농어업·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,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
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

제3조(시설기준)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준용)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식품위생법」을 준용한다.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식품제조·가공업의 시설기준(제3조 관련)

1.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(이하 "건물"이라 한다)
 - 가. 건물은 축산폐수·화학물질,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.
 - 나.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.
2. 작업장
 - 가.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·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(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되어야 한다. 다만,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(농산물 등)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 - 나. 작업장은 원료처리실·제조가공실·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·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,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, 구획(칸막이·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구분(선·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하도록 한다.
 - 다. 작업장의 바닥·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.
 - 1)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,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2)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.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.
 - 3)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, 벽, 바닥, 천장, 출입문, 창문 등은 내구성,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, 세척·소독이 쉬워야 한다.
 - 4) 1), 2), 3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.
 - 라.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·유해가스·매연·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마.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, 설치류,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3. 식품취급시설 등

가.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·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·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
나. 냉동·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 급수시설

가. 수돗물이나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5. 화장실

가.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. 창고 등의 시설

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7. 검사실

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제1호사목에 따른다.

8. 운반시설

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,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·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.

남원시 공무원직 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 직인

2015년 1월 20일

남원시 훈령 제 339 호

남원시 공무원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시 공무원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전환자 : 「‘12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」에 따라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인력

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무직근로자 정수표(제6조제1항 관련)

구분	계	행정실무원				시설관리원				도로보수원	환경관리원	물리치료사	의류공업관리사	전환자(국비사업)				
		소계	행정조	청사경	진료보조	소계	시설비유관	현장작업장리	현장단감					소계	통합사례관리사	영양플러스	방문보건관리	
계	231	74	67	4	3	36	8	23	5	12	84	9	2	14	3	2	9	
본 청	소계	137	35	32	3	0	12	0	7	5	12	73	0	2	3	3	0	0
	기획실	2	1	1			1		1						0			
	감사실	0	0				0								0			
	시민소통실	1	1	1			0								0			
	총무과	8	6	3	3		2		2						0			
	홍보전산과	2	1	1			1		1						0			
	민원과	3	3	3			0								0			
	문화관광과	7	7	7			0								0			
	교육체육과	2	0				0					2			0			
	주민복지과	7	2	2			0						2	3	3			
	여성가족과	1	1	1			0								0			
	환경과	71	0				0					71			0			
	재정과	3	3	3			0								0			
	경제과	4	3	3			1			1					0			
	안전재난과	0	0				0								0			
	농정과	2	2	2			0								0			
	원예허브과	3	1	1			2		2						0			
	축산과	1	1	1			0								0			
	산림과	1	0				1		1						0			
	도시과	1	1	1			0								0			
건설과	13	1	1			0				12				0				
교통과	5	1	1			4			4					0				
건축과	0	0				0								0				
직속기관	소계	31	6	3		3	5	5				9		11		2	9	
	보건소	23	3			3	0					9		11		2	9	
	농업기술센터	8	3	3			5	5						0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직종의 구분 등) ① (생 략)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직종의 구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전환자 : 「‘12공공부문 비정 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」에 따 라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인력</u>